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제26호 신설).
-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, 원자력이용 과정에서 안전 전반에 대한 책무를 지도록 함(안 제2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